

수 신 :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제 목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2022년 7월 13일

대표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박종필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권기훈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김재우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우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손한국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윤권근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발의의원 : 대구광역시의회 하중환 의원 (서명 또는 날인)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2.07.13.

발 의 의 원 : 박종필 의원
권기훈 의원
김재우 의원
김태우 의원
손한국 의원
윤권근 의원
전경원 의원
하중환 의원

1. 개정 이유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첨단 디지털 기술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문화 확산, 디지털 행정 구현 지원 등의 기능 확대를 통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및 디지털 혁신기술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안 제명)
- 나.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으로 명칭 변경(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수행사업 신설(안 제3조)
-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참고 사항

- 가. 관계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등
-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다. 예산조치 : 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소프트웨어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산업의 육성 발전을”을 “디지털 혁신을 통한 디지털 행정 구현 지원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중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을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행정 구현 지원
7. 디지털 혁신 미래인재 양성
9.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제1항 제10호 중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를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진흥원에는”을 “진흥원에”로 한다.

제7조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3조 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회계운용)”을 “(사업연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결산서 등 제출)”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2월”을 “2개월”로 한다.

-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때”를 “경우”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설립을 위해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보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모든 재산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이 승계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u></p>	<p><u>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지역의 <u>소프트웨어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디지털 혁신을 통한 디지털 행정 구현 지원과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u> ----- 대구 디지털혁신진흥원 ----- 필요한 ----- -----.</p>
<p>제2조(설립)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p>	<p>제2조(설립)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 -----.</p>
<p>제3조(사업) ① (생략) 1. ~ 3. (생략) 4. <u>디지털산업분야의 창업, 인력양성, 국내·외 마케팅, 컨설팅,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업지원 사업</u> 5. (생략) <u><신설></u></p>	<p>제3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 <u>국내외</u> ----- -----.</p>
<p>6. (생략) 7. <u>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u> <u><신설></u></p>	<p>5. (현행과 같음) 6. <u>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행정 구현 지원</u> 8. (현행 제6호와 같음) 7. <u>디지털 혁신 미래인재 양성</u> 9. <u>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u></p>

현 행	개 정 안
<p>② (생 략) 제4조(정관) ① (생 략) 1. ~ 9. (생 략) 10. 그 밖에 진흥원 <u>운영에 관하여</u> <u>필요한 사항</u> ② 진흥원의 정관을 <u>제정 또는 변</u> <u>경하고자 할 때에는</u> 대구광역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 여야 한다.</p> <p>제5조 (임원 및 이사회) ① <u>진흥원에</u> 는 이사장, 원장, 이사와 감사를 두 며,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 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p> <p>② (생 략)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소프트웨 <u>어산업 진흥법</u>」 제9조에 따라 진 흥원의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 다.</p> <p>제8조(업무의 위탁)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u>아니한</u>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 례」에 <u>의한다</u>.</p> <p>제9조(회계운용) 진흥원의 사업연도 는 대구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 도에 따른다.</p>	<p><u>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u></p> <p>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 <u>운영에</u> ----- -----. ② ----- <u>제정하거나 변경하</u> <u>려는 경우</u> ----- -----. 제5조 (임원 및 이사회) ① <u>진흥원에</u>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재정지원) ---- 「소프트웨어 진 <u>흥법</u>」 제13조제3항 ----- ----- ----- ----- -----. 제8조(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않은</u> ----- ----- ----- <u>따른다</u>. 제9조(사업연도) ----- ----- -----.</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결산서 등 제출) <신 설></p> <p><신 설></p> <p>③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서와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1조(지도·감독) ① (생 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③ ----- 2개월 -----.</p> <p>제11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p> <p>② ----- 경우 ----- 그 밖에 -----.</p>

관 계 법 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을 진흥시키고 국가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의 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및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에 자금 및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7조(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이하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부서, 인력, 자금 및 물적 시설을 확보할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관할을 권역으로 하여 각 권역에 소재한 지역산업진흥기관 중 해당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1개의 지역산업진흥기관(이하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권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권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 및 권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정책 및 제도의 조사·연구
 - 나. 권역 현황 및 실태의 조사·연구
 - 다. 연구개발사업 및 결과 보급
 - 라. 지원 시설의 조성 및 운영
2. 권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분야 또는 소프트웨어 및 권역 산업이 융합된 산업 분야의 기업 육성 및 창업 촉진
3.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 및 인력 양성
4. 소프트웨어의 이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
5.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국제협력 촉진 및 해외진출 지원
6. 소프트웨어의 품질 역량 강화
7.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지원 및 지역 산업과의 융합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군 또는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를 관할로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업무를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지역산업진흥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는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권역”은 “지역”으로 본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지역산업진흥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지역산업진흥기관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지역산업진흥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의 추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위탁업무 수행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